

- ②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.
- ㉠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,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(출처 : 대법원 2013. 4. 26. 2011다50509).
- ㉡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
 - ㉢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만 약정이 있는 경우,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.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13. 4. 26. 2011다50509).
 - ㉣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, 지연손해금도 법정이율에 의한다.

(3) 물건의 반환

- 1) 548조 2항의 금전의 경우와의 균형상 반환할 물건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임료상당의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(대판 2021. 7. 8. 선고 2020다290804).

2)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

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'원인'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34143).

3. 소멸시효

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시,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(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3267).

4. 동시이행

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(549조).